창 원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노149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조성래 (700000-0000000), 대000
	주거 통00 000 00, 0000 (000)
	등록기준지 서0 000 000 000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고00(기소), 김00(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00(국선)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7. 4. 선고 2018고단1508 판결
판 결 선 고	2020. 1.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일시에 0000000호 포터 화물차량을 보유하여 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4. 21:40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가락대로에 있는 가덕대교입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0000000호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3. 14: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계약기간이 2015. 4. 21. 만료된 사실, 의무보험 계약기간 만료 이후인 2015. 10. 14.부터 2016. 12. 23.까지 누군가가 이 사건 차량을 10회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법규위반행위로 단속되어 피고인의 인적사항으로 통고처분이 내려지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일시에 이 사건 차량을 보유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이를 운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000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을 2015. 5.경까지는 자신이 운행하였는데 그 이후로는 이 사건 차량의 행방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10쪽).

2)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일시에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바 없고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된 사실도 없다는 000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신빙성이 떨어진다. 000은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일시 이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12, 113 내지 115쪽),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일시에 자신이 운전

을 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고(실제로 000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제1권 제109 내지 112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결과 자신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등 피고인과는 일종의 택일관계에 있어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반면 000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기도 하다(증거기록 제1권 제107, 108, 124 내지 126쪽). 또한 000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면서 000이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였고, 휴대전화 매장에 별도로 직원을 두었던 것도 아니며,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분실한 적도 없다는 것인데(증거기록 제1권 제66쪽), 이와 같이 이 사건 차량 열쇠의 소재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열쇠를 마지막에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000 이외에 다른 운전자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하는 것은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 없다.

3) 교통법규 위반에 따르는 통고처분 절차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누군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면 단속 경찰관이 그 인적사항을 토대로 운전면허대장을 조회하고 운전자의 얼굴과 운전면허대장의 얼굴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98쪽),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10 범행과 관련하여 단속 경찰관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운전면허증까지 제시받은 다음 통고처분을 부과하였던 것인지는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고, 만일 000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경찰관에게 동생인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였다면 당시 단속 경찰관이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

지 않은 채 운전자의 얼굴과 피고인의 운전면허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진만 잠시 비교한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으로 범칙금을 잘못 부과하는 것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000과 형제 사이로 외모가 서로 닮았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변소를 탄핵할 만한 증거도 달리 나타나 있지 않다).

4)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범행과 관련하여 교통법규위반(꼬리물기) 행위로 단속된 사람이 '조'라는 전자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위 전자서명을 피고인이 한 것이라거나 위 전자 서명의 필적(증거기록 제1권 제77쪽)이 피고인의 필적과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위 범죄일람표 순번 5, 10 범행의 경우에도 전자서명의 모습(증거기록 제1권 제78, 79쪽)에 비추어 볼 때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공시에 동의를 얻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재판장 판사 류기인 _____

판사 서민아 _____

판사 조대현 _____

범 죄 일 람 표

순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차량번호
1	2015. 10. 14. 21:40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가락대로 가덕대교 입구 교차로	0000000
2	2015. 10. 26. 13:21경	통영시 용남면 삼화주유소 앞(통영방면)	〃
3	2015. 10. 28. 15:06경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기점 163.5km 지점	〃
4	2016. 1. 27. 10:25경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양곡터널	〃
5	2016. 4. 2. 13:34경	통영시 항남동 통영세관 앞 도로	〃
6	2016. 5. 19. 14:32경	통영시 용남면 미늘고개	〃
7	2016. 12. 22. 21:19경	부산 강서구 천성동 거가대교 가덕해저터널 출구	〃
8	2016. 12. 22. 21:24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가락대로 가덕대교입구 교차로	〃
9	2016. 12. 22. 21:25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1727 녹산산업대로 7번 신호	〃
10	2016. 12. 23. 14:04경	경북 칠곡군 경부고속도로 152km 지점	〃